

1. 임업직불금 지급 조건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소규모임가, 면적 직불금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지급대상자	① 직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②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③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농촌 외 거주자는 주업기준 충족 필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주업기준(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th> </tr> </thead> <tbody> <tr> <td>1.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법인 10ha)</td> <td></td> </tr> <tr> <td>2.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법인 8,000만 원)</td> <td></td> </tr> <tr> <td>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법인 4,000만 원)</td> <td></td> </tr> </tbody> </table>	주업기준(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1.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법인 10ha)		2.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법인 8,000만 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법인 4,000만 원)
주업기준(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1.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법인 10ha)								
2.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법인 8,000만 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법인 4,000만 원)								

소규모임가, 면적 직불금 개별사항	
구 분	내 용
소규모임가 직불금	① 신청 직전년도 임가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개인 2,000만원 미만), 임가구성원 각각의 시설채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임가구성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②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지역 거주 ③ 임가 내 지급대상 산지면적 합 0.1~0.5ha 이하 및 임가구성원 소유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면적 직불금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② 0.1~3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구 분	내 용					
지급대상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지급대상자	①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② 직전년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③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농촌 외 거주자는 주업기준* 충족 필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주업기준(2가지 중 1개 이상 충족)</th> </tr> </thead> <tbody> <tr> <td>1. 주소지와 동일 시·도 또는 연접 시·군에서 30ha 이상 산지 경영(법인 300ha)</td> <td></td> </tr> <tr> <td>2. 주된 산지 시·군과 연접 시·군까지 100ha 이상의 산지 경영,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 목재 판매액 연 1,6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 원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주업기준(2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1. 주소지와 동일 시·도 또는 연접 시·군에서 30ha 이상 산지 경영(법인 300ha)		2. 주된 산지 시·군과 연접 시·군까지 100ha 이상의 산지 경영,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 목재 판매액 연 1,6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 원 이상
주업기준(2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1. 주소지와 동일 시·도 또는 연접 시·군에서 30ha 이상 산지 경영(법인 300ha)						
2. 주된 산지 시·군과 연접 시·군까지 100ha 이상의 산지 경영,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 목재 판매액 연 1,6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 원 이상						

※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 지방산림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 의무준수사항

구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 사항	①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소유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관리 ②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③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④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⑤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⑥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⑦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⑧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⑨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개별 사항	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수준 사용 ②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③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② 임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직불금 감액

-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최대 40%)**

- 감액 예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반복위반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반복위반 감경, 가중	산지의 형상 위반 (5%)	산지의 형상 위반 (30%)	-	산지의 형상 위반 (10%)
감액합계	15%	50%	40%	50%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액률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반복위반은 감경없음)

3.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 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정수급자 종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②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를 양도·임대·사용대 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자 ③ 지급대상 산지 등에서 임업 종사 여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등의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자
신고포상금 제도	○ 직불금의 신청·선정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직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1588-3249)

□ 부정수급의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

부정수급 종류	분류	부정수금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규모임가	면적·육림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분할 등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3년	

□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내용
직불금 신청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행정기관 담당자	①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②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사례]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 2022년 6월 3일 이행점검 대상자에 선정된 최모씨(64세), 7일 후인 6월 10일에 표본선정된 산지 현장조사에 입회하라는 연락(문자, 메일, 전화)을 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기피하며 현장조사 당일 입회를 거부하였다.

< 법 제21조1항 1차 위반 → 100만원 과태료 처분 >

2. 올 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이모씨(56세)는 20XX년 6월 10일에 이행점검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6월 17일에 진행될 이행점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여 조사에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 법 제21조2항 1차 위반 → 10만원 과태료 처분 >

4. 임업직불금 주요 질의 응답 (Q&A)

Q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해 1년 이상 종사, 90일 이상 종사 증명, 120만원 판매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 ☑ 임산물생산업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 면적 0.1ha 이상,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Q 2

1인이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같은 연도에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한지

- ☑ 다른 토지의 경우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분야 기본직불금 중 면적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은 한도가 적용됨

*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Q3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지를 추후 육림업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업종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산물생산업' 으로 등록하였다가 추후에 '육림업'으로 변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4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 ☑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 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Q5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22년에 직불금 대상 산지를 매입하고 당해연도에 직불금 신청하면 바로 지급 가능한지

- ☑ 임업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1년 이상 종사하여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6 타인이 받고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중 일부를 임차해서 임산물을 재배하려고 함.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 중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 자'의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 소임가직불금 예외 인정	• 면적직불금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임대한 산지 이외의 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임대한 산지 이외의 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 유예기간 후 지급 재개

Q 7 직불금 이행점검 시기에 임산물이 없을 경우 점검 가능한지

- ☑ 임산물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이행점검을 할 경우 토양이 유지되고 있는지, 작물 재배 흔적 등 경계가 구분되는지, 해당 임지에서 재배 중인 사진 자료, 임산물판매실적(임업인에게 요구),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

Q 8 부정수급 적발된 직불금의 환수 가능 기간은

- ☑ 국가보조금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적용
-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제9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3조의2, 「국세기본법」제27조

※ 임업직불제 시행지침 주요질의응답(p.191~203) 참고